

2024 건설안전지표 안내가이드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및 사고사망만인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가이드를 펴내며

고용노동부(공단)은 매년 7월 국내 건설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자율안전·보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안전지표를 공시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이하 “실적평가”)을 평가하고,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가계약제도(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 종합심사낙찰제 또는 적격심사)에 따라 건설업체별 실적평가와 사고사망만인율 결과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낙찰자 선정심사시 가(감)점으로 반영되고 있다. 더불어 사고사망만인율은 차기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실적평가액 감액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안전지표 활용도 및 실효성은 낮은 실정이다. 그간 실적평가의 적용범위는 시공능력 평가 결과가 1천위 이내의 종합건설업체(토목건축면허 보유 기준)로 한정되어 있어 실적평가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업체는 입·낙찰시 가점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모든 종합건설업체가 실적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역량과 여건이 어려우며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규모 건설업체는 대규모 건설업체보다 사고사망만인율 높게 나타나며, 이는 사고사망 감축 효과가 미미해 보인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2.11) 및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24.1)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에 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및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모든 건설업체가 실적평가 및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설안전지표 가이드를 재편하오니 기업의 안전경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목차

Contents

1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 | |
|----------------------------------|----|
| 1. 연혁 | 9 |
| 2. 평가근거 및 대상 | 10 |
| 3. 평가기준 | 11 |
| 4. 평가절차 및 자료제출 | 13 |
| 5. 평가결과통보 및 적용 | 15 |
| 6. 최근연도 결과 및 시사점 | 17 |
| 7. 관련 질의응답 | 18 |
| [참고1] 실적평가 작성예시 및 자료제출 방법 | 22 |

2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 | |
|------------------------------|----|
| 1. 연혁 | 35 |
| 2. 산정근거 및 대상 | 36 |
| 3. 산정기준 및 절차 | 37 |
| 4. 이의신청 | 40 |
| 5. 산정결과 적용 | 42 |
| 6. 관련 질의응답 | 44 |
| [참고1] 사고사망만인율 이의제기 방법 | 46 |

| | | |
|------------|---|----|
| 붙임1 | 건설업체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세부 평가기준 | 52 |
| 붙임2 |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재발생 보고의무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 68 |
| 붙임3 | 공사계약 낙찰방식 | 71 |
| 붙임4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심사항목 세부지표 | 72 |



PART

1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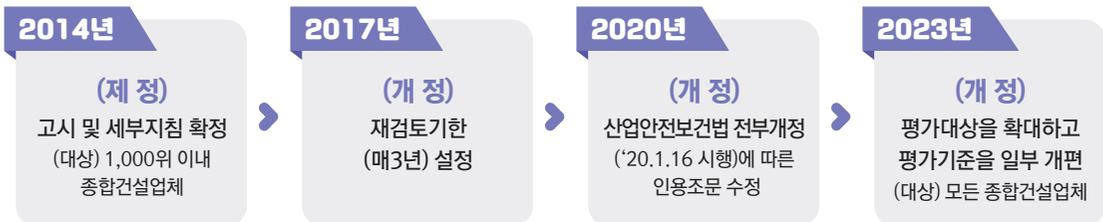


1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01 연혁

- 2014년 제정(고시 제2014-20호)된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기준은 3년 주기로 개정되며, 2017년, 2020년, 2023년에 각각 개정함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실적 평가 기준(고시 제2023-45호, 개정 2023.08.31.)은 제1장 총칙, 제2장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 평가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음
- 평가기준의 개정은 총 3번 있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 및 이유를 검토해 보면 행정 연속성 및 법령 집행 통일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체 실적평가 재검토 기한 설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공평한 입·낙찰 가점 기회 제공을 위한 평가대상 확대에 대한 개정을 실시함



- (**14.04.**) 제2014-20호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시 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7호 나목 평가사항 규정
- (**17.10.**) 제2017-49호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시 개정
- 재검토기한 재설정(2018.1월1일 기준으로 매3년 시점)
- (**20.01.**) 제2020-4호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시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23.08.**) 제2023-45호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시 개정
- 평가대상 확대(시공능력 1,000위 이내→모든 종합건설업체)

02 평가근거 및 대상

1. 평가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을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

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2. 평가대상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호(2023.8.31.) 제2조에 따라 평가년도의 전년도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 매년 평가대상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종합건설업체 명단 확정
 - ※ 대한건설협회 제공,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면허보유 대상

03 평가기준

1.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호(2023.8.31.)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따름

2. 평가유형 및 항목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유무에 따라 평가유형 및 항목 구분적용
 - (“가”형)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점수 | |
|---|---|-------------------|--------------------|
| | |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현장 보유 |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현장 미보유 |
| | 총점 | 105점 | 105점 |
| 공통항목 (100점) | 가.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 40점 | 40점 |
| |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과정 이수(1회) | 10 | 10 |
| | -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10회) | 30 | 30 |
| | 나.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 40점 | 40점 |
| | · 선임 신고된 전담 안전관리자 | | |
| | - 정규직 비율 70% 이상 | 25 | 40 |
| | - 정규직 비율 60% 이상 | 20 | 32.5 |
| | - 정규직 비율 50% 이상 | 15 | 25 |
| | - 정규직 비율 40% 이상 | 10 | 17.5 |
| | - 정규직 비율 40% 미만 | 5 | 10 |
| | · 선임 신고된 전담 보건관리자 | | |
| | - 정규직 비율 70% 이상 | 15 | |
| | - 정규직 비율 60% 이상 | 12.5 | |
| | - 정규직 비율 50% 이상 | 10 | - |
| - 정규직 비율 40% 이상 | 7.5 | | |
| - 정규직 비율 40% 미만 | 5 | | |
| 다. 분사 안전·보건 전담자 | | 20점 | 20점 |
| 1위~20위 업체 (토건면허 시공능력평가순위) | 1. 분사 전담 임·직원 수 - 전담 임·직원 수가 X 이상 $x = [21 - \text{해당업체 시공능력순위}] \times 0.75 + 4$ | 15 | 15 |
| | - 전담 임·직원 수가 X 이상 $x = [21 - \text{해당업체 시공능력순위}] \times 0.5 + 3$ | 10 | 10 |
| 21위~200위 업체 (토건면허 시공능력평가순위) | 2. 전담 조직 및 전담 임원 | 5 | 5 |
| | 1. 분사 전담 임·직원 수 (유자격 2명 포함) - 전담 임·직원 4명 이상 | 15 | 15 |
| 201위~500위 업체 (토건면허 시공능력평가순위) | - 전담 임·직원 3명 | 10 | 10 |
| | 2. 전담 조직 구성 | 5 | 5 |
| 501위~1,000위 업체 (토건면허 시공능력평가순위) | 전담 임·직원 3명 이상(유자격 1명 포함) | 20 | 20 |
| | 전담 임·직원 2명 이상 | 10 | 10 |
| 상위 1,000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토건면허 시공능력평가순위 및 그 외 면허) | 전담 임·직원 2명 이상(유자격 1명 포함) | 20 | 20 |
| | 전담 임·직원 1명 이상 | 10 | 10 |
| 가점항목 (5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 5점 | 5점 |
| | - 인증 유지 중인 경우 | 5 | 5 |
| | - 인증심사 진행 중인 경우 | 3 | 3 |

▼ 참고사항

다.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평가항목 관련

- ▶ 구분 항목의 순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토목건축공사업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순위에 따름
- ▶ 이외 종합건설업 면허(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를 보유한 종합건설사업자는 “상위 1,000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항목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나”형)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미보유 건설업체

| 구분 | 평가지표 | 평가점수 |
|----------------|--------------------------|------|
| | 총점 | 105점 |
| 공통항목 (100점) | 가.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 50점 |
| |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과정 이수(1회) | 15 |
| | -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10회) | 35 |
| | 다.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 50점 |
| | - 전담 임·직원 1명 이상(유자격) | 50 |
| | - 전담 임직원 1명이상 | 20 |
| 가점항목 (5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 5점 |
| | - 인증 유지 중인 경우 | 5 |
| | - 인증심사 진행 중인 경우 | 3 |

04 평가절차 및 자료 제출

1. 평가절차

-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해 1차 평가(본부) 실시 후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본부/산하기관) 실시,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결과 확정·통보



* 평가운영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매년 공단에서 문서로 안내하는 일정에 따름

2. 자료제출

-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홈페이지(<https://const.kosha.or.kr>)에 접속하여
 ①별지서식 및 ②증빙서류 업로드 (참고1. 제출방법 참조)

① (별지서식)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 <https://const.kosha.or.kr> 접속 → “산업재해예방활동평가” → “자료실”

② (증빙서류) 가능한 PDF 양식 업로드 (불가시, 한글 또는 엑셀)

| 평가항목 | 별지서식 | 증빙서류 |
|-----------------------|------------------|---|
| 1. 사업주 안전교육 이수 등 | | |
| ① 안전보건교육 이수실적 | 없음 | 없음 |
| ②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 [별지1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이사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에 관련된 간담회, 순회점검에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현장 안전·보건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 작업 전 안전회의(TBM),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아차사고 신고제도, 비상조치계획 |
| 2.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 [별지2호] [별지3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자가 전담으로 선임됨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선임보고서 안전·보건관리자가 정규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내 전산자료 |
| 3.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 [별지4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 전체조직도 안전보건전담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본사 안전보건업무 수행사실이 확인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소속/직무, 인정일 갱신) |
| 4. 가점항목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서 |

◆ (제출기한) 제출기한(2월말)이후 접수 불가하며 미제출시 평가점수 미부여

3. 모니터링

- 업체별 제출한 실적평가 자료*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본사 및 현장 방문 모니터링 실시

*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평가항목 별 별지서식 및 증빙서류

- (모니터링 대상) 업체별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조직) 획득 점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모니터링 방법) 관계자 면담, 관련 서류, 사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해당 업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태 확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호(2023.8.31.) 제6조에 따른 평가항목 내용

◆ (부정행위) 제출자료가 허위 또는 거짓 판명될 경우 즉시 해당 연도의 평가점수를 공표한 날로 소급하여 0점 처리하고 다음 연도 평가대상 제외

4. 이의신청

- 제출한 실적자료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1차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을 등기로 안내 (평가년도 5월~6월 중)

-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 실적을 제출했던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신청

※ <https://const.kosha.or.kr> 접속 →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 → “실적평가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클릭 (우편, fax, 방문신청 불가)

- (이의신청 기간) 평가년도에 등기로 안내한 기간 참조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가 확정(매년 7월초) 된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안내된 기간을 준수하여 이의 신청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제27조(의견제출)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이의신청 대상)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제출하였으나 1차 평가 결과에 불인정 항목이 있는 건설업체

※ 1차 평가 결과 허위 제출 사실이 확인되어 “0”점으로 통보된 건설업체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05 평가결과 통보 및 적용

1. 결과통보

- 고용노동부(공단)에서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건설업체별 결과는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반영
 - (조달청·지자체) 국가계약법령 및 제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¹⁾ 및 종합심사낙찰제²⁾, 시설공사 적격심사³⁾에 가점 적용
 - (건설업체) 최종 평가결과 확인방법 안내문 발송
- ※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https://const.kosha.or.kr>)에서 각 업체별 로그인 후 평가결과(항목별 배점 포함) 확인 가능

2. 결과적용

- (가점) ^{공공}건설공사 입·낙찰제도 심사기준에 따른 가점 반영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 (조달청)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가점 최대 1.0점 반영
 - (행안부) 공사이행능력심사 중 신인도 가점 최대 2.0점 반영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조달청 지침, 24.10.2. 시행】 | 지자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행정안전부 예규, 24.7.1. 시행】 |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점 95점 이상인 자 +1.0 ·평점 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0.8 ·평점 85점이상 90점미만인 자 +0.6 ·평점 80점이상 85점미만인 자 +0.4 ·평점 75점이상 80점미만인 자 +0.2 ·평점 75점 미만인 자 +0.0 | 공사이행능력심사 중 신인도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점 90점 이상인 자 2.0점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1.5점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1.0점 ·평점 70점 미만인 자 0.0점 ※ 실적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0.2점 |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3)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가격 등 종합심사하고 낙찰자 결정

- (종합심사낙찰제)

- (조달청) 사회적 책임분야(건설안전) 가점 최대 0.8점 반영
- (행안부) 사회적 신인도(산업재해 예방활동) 가점 최대 1.0점 반영

| 종합심사낙찰제 【조달청 지침, 24.10.2. 시행】 | 지자체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행정안전부 예규, 24.7.1. 시행】 |
|--|---|
| 공사수행능력 중 사회적 책임분야(건설안전) 심사점수 가점 | 기술이행능력 중 사회적 신인도(산업재해 예방활동) 가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점 90점 이상인 자 0.80점 · 평점 80점 이상 90점미만인 자 0.72점 · 평점 70점 이상 80점미만인 자 0.64점 · 평점 60점 이상 70점미만인 자 0.56점 · 평점 50점 이상 60점미만인 자 0.48점 · 평점 50점 미만인 자 0.40점 ※ 평점이 없는 경우 0.40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점 90점 이상인 자 1.0점 · 평점 80점 이상 90점미만인 자 0.8점 · 평점 70점 이상 80점미만인 자 0.6점 ※ 실적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0.2점 |

- (시설공사 적격심사)

- (조달청) 추정가액 100억 미만 공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신인도 가점 최대 1.0점 반영
- (행안부) 추정가액 300억 미만 공사 신인도 평가 중 가점 최대 2.0점 반영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24.10.2. 시행】 |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4.7.1. 시행】 |
|--|--|
| 수행능력 평가 중 신인도 가점 | 공사이행능력심사 중 신인도 가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점 95점 이상인 자 +1.0 · 평점 90점 이상 95점미만인 자 +0.8 · 평점 85점 이상 90점미만인 자 +0.6 · 평점 80점 이상 85점미만인 자 +0.4 · 평점 75점 이상 80점미만인 자 +0.2 · 평점 75점 미만인 자 +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점 90점 이상인 자 2.0점 · 평점 80점 이상 90점미만인 자 1.5점 · 평점 70점 이상 80점미만인 자 1.0점 · 평점 70점미만인 자 0.0점 ※ 실적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0.2점 |

※ 관련 규정 개정 및 각 기관·단체의 자체규정에 따라 점수 적용이 상이할 수 있음

06 최근연도 평가결과 및 시사점

1. 최근연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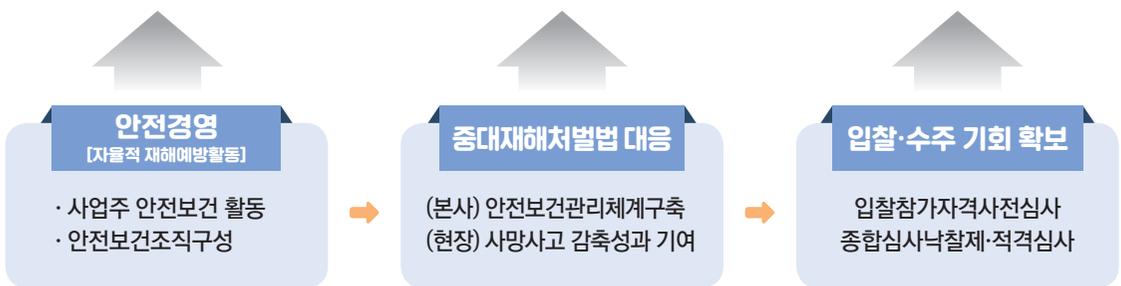
- 최근 5년간('20~'24)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평균 참여업체는 509개사(참여율 약 50%), 평균 점수는 72.3점으로써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 실적 평가기준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5호)에 따라 '25년에는 평가대상 확대*로 참여 업체수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前)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0위 이내 → (後) 모든 종합건설업체(약 1만9천개사)

| 구분 | 평균 | '20년 ('19년 실적) | '21년 ('20년 실적) | '22년 ('21년 실적) | '23년 ('22년 실적) | '24년 ('23년 실적) |
|----------|---------------|--------------------|--------------------|--------------------|--------------------|--------------------|
| 제출업체(개사) | 509 /1,000 | 450 /1,000 | 496 /1,000 | 479 /1,000 | 549 /1,000 | 571 /1,000 |
| 참여율 (%) | 50.9 | 45.0 | 49.6 | 47.9 | 54.9 | 57.1 |
| 평가점수 | 72.3 | 69.2 | 64.3 | 71.2 | 78.2 | 78.4 |

2. 시사점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 **안전경영 + 중대법 대응 + 공사입찰·수주 ⇒ 건설업체 실적평가**

→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직 구성, 교육·행사참여 등 자율적인 안전경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사망사고를 줄이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사 입찰 및 수주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적극 참여 필요

07 관련 질의응답

1. 인수·합병시 평가기준

- Q 평가년도 인수·합병등 발생하였을 경우 평가적용기준?
- A 평가대상 업체 선정기준은 평가대상 연도 12월 31일 기준이므로 평가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2.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과정 이수 인정 범위

- Q 안내한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외 다른 사업주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도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A 안내한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이 아닌 이외의 안전보건교육 과정*은 불인정, 또한 해당 평가항목의 취지상 CSO, 임·직원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이사(사업주)를 대신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불인정
* (이외의 안전보건 교육 과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 교육,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등

3.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과정 이수 인정 범위

- Q A업체와 B업체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사업주가 A업체로 이수하였을 경우 B업체도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과정” 이수를 인정해줄 수 있는지?
- A A회사와 B회사의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같은 사업주 교육을 2번 이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증빙자료(이수증) 제출 시 교육 이수 인정

4.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횟수

- Q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평가 시 월1개소 이상에서 ‘월’이라 함은 역에 의한 계산기준 인지 매월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지?
- A 월 1개소 기준에서 ‘월’이라 함은 민법상 역에 의한 계산에 따른 기간이 아닌 매월 기준으로 함 예) 안전보건점검을 1.31, 2.1, 2.25, 3.1, 4.1, 4.30 등 6회 실시할 경우 매월을 기준으로 실적을 반영하여 4회 인정함

5. 비주관사 행사 참여

- Q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평가 시 해당 건설업체가 비주관사로 있는 현장 행사에 참여해도 인정되는지?
- A 비주관사로 참여한 현장이라도 주관사에서 작성한 공문 및 결과보고서에 사업주 참여여부가 확인될 경우가 인정 가능

6.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가능 현장

- Q 사업주의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가 가능한 현장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현장만 가능한지?
- A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설업체가 수행 중인 사업장(현장)은 모두 가능함

7.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평가 시 증빙자료

- Q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평가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 A ①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선임보고서와
② “정규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을 증빙해야 함

8. 근로계약서 대체서류

- Q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증빙자료 제출 시 근로계약서 대신 연봉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 A 연봉계약서의 경우 계약기간이 명기되어 정규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 재직증명서에는 정규직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불가

9. 고용형태 변경 시 평가방법

- Q 평가대상 연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경 된 경우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 A 평가대상 연도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간 중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평가하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평가

10. 공사금액 변경 시 안전·보건관리자 등록

- Q 계약 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선임해야 되는 안전·보건관리자 수가 변경되었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A 평가대상인 안전·보건관리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당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의 선임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으로 계약 변경일이 6개월을 초과하였다면 변경된 기준으로 등록
예) 6월 30일 이전 계약 변경 → 변경된 안전관리자 수 등록
7월 1일 이후 계약 변경 → 변경 전 안전관리자 수 등록

11. 선임 의무 초과 선임한 경우 평가방법

- Q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건설업 사업장(현장)에서 선임 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경우 평가 방법은?
- A 선임 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이 아닌 자는 평가에서 제외

12.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평가 시 증빙자료

- Q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평가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 A ① 본사 조직도 및 ② 안전보건 전담자 업무분장표, ③ 안전보건 전담자에 대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평가대상 연도에 본사 안전보건 전담부서 경력 업데이트 확인)와 ④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이 있을 경우 그 자격증 사본을 원칙으로 하며, 재직증명서 등은 불인정

13.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자격

- Q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평가 시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 중 안전·보건양성교육이수자도 인정되는지 여부
- A ① 안전관리자 자격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8호를 제외하고 인정
② 보건관리자 자격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해당될 경우 인정

14. 본사 전담직원 퇴사

- Q 본사 안전전담직원이 평가대상 연도에 근무하였다가 다음 연도(평가연도)에 퇴사할 경우 평가에 반영여부 및 모니터링 방법?
- A 본사 전담직원이 평가대상 연도에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관련 증빙이 모두 제출된다면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에 포함하여 평가(증빙 미제출시 불인정)
※ 평가를 위한 본사 방문 모니터링 시 해당 인력에 대한 근무 및 활동내역 확인 실시

1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범위

- Q 전문면허 또는 제조업면허에 대한 KOSHA-MS 인증도 가점 대상인지?
- A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대상이 종합건설업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건설면허에 대한 인증만 인정

1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신청

- Q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항목 중 안전보건공단 인증 신청한 경우 산정방법은?
- A 공단과 인증심사 계약 후 심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3점)부여하고, 인증심사 계약만 이루어진 경우 불인정

참고 실적평가 작성예시 및 자료제출 방법

• 별지 작성예시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작성예시

■ [별지 제1호서식]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현황

(제1쪽)

I. 건설업체 개요

| | | | | |
|----|-------|------------------|-----------------------|---------------------------------|
| 본사 | ①사업장명 | ㈜홍길동건설 | ②법인등록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 1234560012345 (123-12-12345) |
| | 대표자 | 홍길동 | ③사업장관리번호 | 12312123456 |
|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풍가로 400 | 시공능력평가순위 | 20,451위 |

II.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현황 시공능력평가순위 작성(토건면허 기준)

| 연번 | 현장명 | ④사업개시번호 | 현장 방문일 | 주요 내용(요약) |
|----|------------------|-------------|----------|-----------------------------------|
| 1 | 공수구청 신사옥 신축공사 | 91234567897 | 24.1.7 | 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간담회 실시, 위험요인 점검 |
| 2 | 곡기동 태산빌딩 신축공사 | 91234568897 | 24.2.8 | 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간담회 실시, 위험요인 점검 |
| 3 | 태극동 일대 하수관로 교체공사 | 91234566697 | 24.3.16 | 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간담회 실시, 위험요인 점검 |
| 4 | 화랑백화점 리뉴얼 공사 | 91234555597 | 24.5.22 | 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간담회 실시, 위험요인 점검 |
| 5 | 공수구청 신사옥 신축공사 | 91234567897 | 24.6.14 | 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간담회 실시, 위험요인 점검 |
| 6 | 곡기동 태산빌딩 신축공사 | 91234568897 | 24.7.23 | 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간담회 실시, 위험요인 점검 |
| 7 | 태극동 일대 하수관로 교체공사 | 91234566697 | 24.8.26 | 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간담회 실시, 위험요인 점검 |
| 8 | 화랑백화점 리뉴얼 공사 | 91234555597 | 24.10.11 | 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간담회 실시, 위험요인 점검 |
| 9 | 공수구청 신사옥 신축공사 | 91234567897 | 24.11.7 | 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간담회 실시, 위험요인 점검 |
| 10 | 곡기동 태산빌딩 신축공사 | 91234568897 | 24.12.16 | 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간담회 실시, 위험요인 점검 |
| 합계 | 사업주 방문 현장별 정보 기입 | | | 총 (10) 회 |

작성자 소속 및 성명 : ㈜홍길동건설 본사 안전보건관리실, 곡인수 **사업주가 참석한 횟수 표기**

작성자 전화번호 : 052-703-0600

작성일 2024년 1월 2일

사업주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사업주 서명

공지사항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공단의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작성방법

- ① 사업장명: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쪽 작성예시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결과보고서

(제1쪽)의 연번 기입

(제2쪽)

I. 건설현장 개요

| | | | |
|-------|------------------|---------------------|------------------------------|
| 연 번 | 1 | 현장명 | 광수구청 신사옥 신축공사 |
| 방문 일시 | 24. 1. 7.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12312123456 (91234568897)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수구 신북로 24 | 공사금액 (VAT 포함) | 530억원 |

II. 사업주 안전·보건 간담회

| | | |
|-----|----|--|
| 참석자 | 본사 | (소속) ㈜홍길동건설 (직급) 대표이사 (성명) 홍길동 |
| | | (소속) ㈜홍길동건설 안전보건관리실(본사) (직급) 실장 (성명) 곡민수 |
| | 현장 | (소속) ㈜홍길동건설 광수구청 신사옥 현장 (직급) 현장소장 (성명) 박병수 |
| | | (소속) ㈜홍길동건설 광수구청 신사옥 현장 (직급) 안전팀장 (성명) 홍필기 |

| | |
|---|--------|
| 주요 내용 | 간담회 사진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에 따른 현장 작동성 확인 및 예로사항 청취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 안전보건 활동사항 점검 - 위험성평가 실시 및 근로자 참여여부 등 - 아자사고 신고제도,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주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에 관한 적정성 확인 현장내 발생했던 산업재해 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 |

III. 현장 안전·보건활동

| | | | |
|----------------|---|----------------|---|
| 작업 전 안전회의(TBM)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
| 아자사고 신고제도 |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이행 | 비상조치계획 수립 |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이행 |

참고자료

현장 안전·보건활동 여부를 확인한 자료는 별첨 참조

별첨 1. 작업 전 안전회의(TBM) 현황(최근 3개월) 1식.
2.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1식. 끝

사업주가 확인한 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자료를 별첨으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제3쪽 작성예시

(제3쪽)

| IV. 현장 위험요인 점검 | | | | |
|---|----|--|-------------------------|--|
| 참석자 | 본사 | (소속) ㈜홍길동건설 (소속) ㈜홍길동건설 안전보건관리실(본사) | (직급) 대표이사 (직급) 실장 | (성명) 홍길동 (성명) 곡민수 |
| | 현장 | (소속) ㈜홍길동건설 (소속) 홍수구형 신사옥 현장 (소속) ㈜홍길동건설 (소속) 홍수구형 신사옥 현장 | (직급) 현장소장 (직급) 안전팀장 | (성명) 박병수 (성명) 홍원기 |
| *위험요인 | | 주요 점검 내용 | | 사업주 지원 대책(사업주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예산 인력 시설 지원 등 |
| | | 굴착기 | 일부 굴착기 후방카메라 미부착 | 후방카메라 설치비용 지원 등 |
| | | 단부 개구부 | 태워 거푸집 조립 시 안전난간 설치 어려움 | 거푸집 용 안전난간 구매 지원 등 |
| 사업주가 확인한 주요 점검 내용 및 대책 작성 (사업주 현장 점검 사진, 위험요인 전·후 사진 첨부) | | | | |
| [참고] 건설현장 핵심 위험요인 16종 | | | | |
| • 단부 개구부, • 절골, • 지붕, • 비계, • 사다리, • 달비계, • 이동식비계, • 거푸집동태러, • 굴착기, • 고소작업대, • 트럭, • 이동식크레인, • 타워크레인, • 할타왕발기, • 용집장치, • 밀폐공간 | | | | |

작성자 소속 및 성명 : ㈜홍길동건설 본사 안전보건관리실, 곡민수

작성자 전화번호 : 052-703-0600

작성일 2024년 1월 7일

사업주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사업주 서명

작성방법

- ① 연 번: 1쪽 ㉠의 각 현장별 연번을 기재합니다.
- ②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③ 주요 내용: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작성합니다.
- ④ 참고 자료: 현장 안전·보건활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첨부합니다.
- ⑤ 위험 요인: 현장 순회점검에서 확인한 위험요인을 작성합니다.

착안 사항

- 대 상: 대표이사(사업주)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 가능(○), 임원·부사장 등(X)
- 증빙서류: 1. 대표이사가 간담회, 현장 순회점검에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현장 안전·보건활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작성예시 (해당 없을 경우 미제출)

■ [별지 제2호서식]

전담 안전관리자 현황 목록

I. 건설업체 개요

| | | | | |
|----|-------|------------------|-----------------------|---------------------------------|
| 본사 | ①사업장명 | ㈜동일건설 | ②법인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1234560012345 (123-12-12345) |
| | 대표자 | 홍길동 | ④사업장관리번호 | 12312123456 |
|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가로 400 | 시공능력평가순위 | 20,451위 |

II. 전담 안전관리자 현황

| 연번 | 현장명 | ①사업계시번호 | 공사금액 (VAT 포함) | 성명 | 성별 | ②선임기간 (평가기간 내 근무일수) | 정규직 (O,X) |
|----|-------------------------------|-------------|------------------|---|----|-------------------------|--------------|
| 1 | 경주구항 신사옥 신 공공사 | 91234567897 | 530억 | 홍길동 | 남 | 24.1.1~12.31 (365일) | O |
| 2 | 대구중 대산빌딩 신 공공사 | 91234568897 | 140억 | 김민수 | 남 | 24.3.1~12.31 (304일) | O |
| 3 | 대전중 현대 허수관 로 고층공사 | 91234566697 | 56억 | 홍길동 | 남 | 24.8.30~12.31 (185일) | X |
| 4 | | | | | | | |
| 5 | | | | | | | |
| 6 | 전임 신고된 현장의 사업 개시번호 및 금액 적성 | | | 평가기간 내 근무일수만 작성 (제출일 기준) ※ 6개월 초과 근무자만 해당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합계 | ④선임 의무 전담 안전관리자 수 | (3) 명 | | ⑤정규직 전담 안전관리자 수 | | (2) 명 | |

작성자 소속 및 성명 : ㈜동일건설 본사 안전보건관리실, 국민수

작성자 전화번호 : 052-703-0600

작성일 2024년 1월 7일

사업주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준수

| | |
|------|--|
| 첨부서류 | 1. 전담 안전관리자의 선임보고서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1부 |
|------|--|

공지사항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공단의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작성방법

- ① 사업장명 :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② 법인등록번호 :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 사업장관리번호(사업계시번호)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계시번호)를 적습니다.
- ⑤ 선임기간 : 고용노동부에서 선임 신고된 날 ~ 종료일(예시 1911.20~2010.5 또는 19.11.20 ~)
- ⑥ 선임 의무 전담 안전관리자 수 :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평가기간 중 6개월 초과 근무한 전담 안전관리자 집단 수
- ⑦ 정규직 전담 안전관리자 수 :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평가기간 중 6개월 초과 근무한 정규직 전담 안전관리자 집단 수

착안 사항

- 대 상 : 평가대상연도 기준 현장 전담 안전관리자 중 6개월 초과 근무자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건설현장은 있으나 선임기간 6개월 미만: 평가제외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건설현장이 없는 경우: 평가유형 변경
- 증빙서류: 1. 고용노동부 선임신고서류(전담여부 확인, 공사금액 확인)
2. 근로계약서(정규직/상용직/비정규직 여부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작성예시 (해당 없을 경우 미제출)

■ [별지 제3호서식]

전담 보건관리자 현황 목록

I. 건설업체 개요

| | | | | |
|----|-------|------------------|-----------------------|---------------------------------|
| 본사 | ①사업장명 | ㈜동일건설 | ②법인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1234560012345 (123-12-12345) |
| | 대표자 | 홍길동 | ④사업장관리번호 | 12312123456 |
|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가로 400 | 시공능력평가순위 | 20,451위 |

II. 전담 보건관리자 현황

| 연번 | 현장명 | ①사업개시번호 | 공사금액 (VAT포함) | 성명 | 성별 | ⑤선임기간 (평가기간 내 근무일수) | 정규직 (O,X) |
|----|----------------------|-------------|-----------------|--------------------|---------|------------------------|--------------|
| 1 | 경주구항 신사옥 신 축공사 | 91234567897 | 860억 | 홍철아 | 여 | 24.1.1-12.31 (365일) | O |
| 2 | 대구중대신발전 신 축공사 | 91234568897 | 1,121억 | 강민영 | 여 | 24.3.1-12.31 (304일) | O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합계 | ⑥선임 의무 전담 보건관리자 수 | (3) 명 | | ⑦정규직 전담 보건관리자 수 | (3) 명 | | |

작성자 소속 및 성명 : ㈜동일건설 본사 안전보건관리실, 국민수

작성자 전화번호 : 052-703-0600

작성일 2024년 1월 7일

사업주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준수

| | |
|------|--|
| 첨부서류 | 1.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1부. |
|------|--|

공지사항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공단의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작성방법

- ① 사업장명 :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② 법인등록번호 :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⑤ 선임기간 :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된 날 ~ 종료일(예시 19.11.20~20.10.5 또는 19.11.20 ~)
- ⑥ 선임 의무 전담 보건관리자 수 :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평가기간 중 6개월 초과 근무한 전담 보건관리자 합산 수
- ⑦ 정규직 전담 보건관리자 수 :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평가기간 중 6개월 초과 근무한 정규직 전담 보건관리자 합산 수

착안 사항

- 대 상 : 평가대상연도 기준 현장 전담 보건관리자 중 6개월 초과 근무자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건설현장은 있으나 선임기간 6개월 미만: 평가제외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건설현장이 없는 경우: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로만 평가
- 증빙서류: 1. 고용노동부 선임신고서류(전담여부 확인, 공사금액 확인)
2. 근로계약서(정규직/상용직/비정규직 여부 확인)

• 제출방법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실적자료 제출



- 1 <https://const.kosha.or.kr> 홈페이지 접속
- 2 로그인 →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건설업체 산재예방활동 → 실적자료 제출 “클릭“

평가유형 선택 → 자료등록

산업재해예방활동평가

사업장 교육이수 여부 확인

증빙자료 업로드

예상점수 확인

증빙자료 이력관리

실적평가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력관리

공지사항

증빙자료 업로드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은 커뮤니티관리-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내용작성, 사업주 서명 후 스캔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동안 업로드 하신 것 중 가장 마지막으로 업로드 하신 것만 반영됩니다.

④ 평가유형 선택

가형 나형

- 가형: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 나형: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 미보유 건설업체

● 별지 제 1호 (안전보건 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결과)

| | | |
|------------|-----------------------------------|------|
| * 서식자료 | | 등록하기 |
| * 추가 증빙 자료 | 첨부 파일은 1개만 가능하며 용량은 100Mb에 한정됩니다. | 등록하기 |

※ 사업주 안전보건점검 참여 여부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횟수 [0회]

⑤ 사업주 안전·보건 활동 결과 등록

안전점검 결과 등록

● 별지 제 2호 (선임된 안전 관리자 현황)

| | | | | | | | |
|-----------|-----------------------------------|---|------------|--|---|--------|------|
| 전체 안전 관리자 | | 명 | 정규직 안전 전담자 | | 명 | 정규직 비율 | |
| 서식자료 | | | | | | | 등록하기 |
| 추가 증빙 자료 | 첨부 파일은 1개만 가능하며 용량은 100Mb에 한정됩니다. | | | | | | 등록하기 |

⑥ 안전관리자 현황 등록

안전관리자 현황 등록

● 별지 제 3호 (선임된 보건 관리자 현황)

| | | | | | | | |
|-----------|-----------------------------------|---|------------|--|---|--------|------|
| 전체 보건 관리자 | | 명 | 정규직 보건 전담자 | | 명 | 정규직 비율 | |
| 서식자료 | | | | | | | 등록하기 |
| 추가 증빙 자료 | 첨부 파일은 1개만 가능하며 용량은 100Mb에 한정됩니다. | | | | | | 등록하기 |

⑦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선택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예 아니오

⑧ 보건관리자 현황 등록

※ 미선임 시 작성 불필요

보건관리자 현황 등록

1 평가유형 선택

- 가형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 나형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미보유 건설업체

2 안전점검결과 등록 (별지 1호서식 + 증빙서류)

- 월별 1회, 최대 10회 인정

3 안전관리자 현황 등록 (별지 2호서식 + 증빙서류)

- 현장 근무 6개월 초과 근무한 안전관리자만 등록)

4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선택

-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미보유 건설업체는 “아니오” 선택

5 보건관리자 현황 등록 (별지 3호서식 + 증빙서류)

- 현장 근무 6개월 초과 근무한 보건관리자만 등록)

자료등록 → 실적자료 제출

⑨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현황 등록

● 별지 제 4호 (안전보건 조직 현황)

안전보건전담자 현황 등록

| | | | | | |
|-----------------|------------------------|--------------------|------------------------|---------------------|------------------------|
| * 안전보건 전담자 (임원) | <input type="text"/> 명 | * 안전보건 전담자 (자격보유자) | <input type="text"/> 명 | * 안전보건 전담자 (자격미보유자) | <input type="text"/> 명 |
| * 서식자료 | <input type="text"/> | | | | 등록하기 |
| * 추가 증빙 자료 | <input type="text"/> | | | | 등록하기 |

첨부 파일은 1개만 가능하며 용량은 100Mb에 한정됩니다.

* 조직구성 여부 예 아니오

⑩ 전담조직 구성 여부 선택

● 제출자정보

| | | | |
|---------------|----------------------|-----------|----------------------|
| * 제출자 성명 | <input type="text"/> | * 제출자 연락처 | <input type="text"/> |
| * 모니터링 방문 주소지 | <input type="text"/> | | |

⑪ 제출자 정보 등록

⑫ 실적자료 제출

- 9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현황 등록 (별지 4호서식 + 증빙서류)
 - 본사 6개월 초과 근무한 안전보건전담자만 입력
- 10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여부 체크 (예 / 아니오)
 - 안전보건조직 : 본사의 조직도 상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실, 부, 팀 또는 과)
 - 전담 조직의 장을 포함한 2명 이상
- 11 제출자(담당자) 정보 입력
 - 제출자료 내용확인 및 추가요청을 위한 담당자 입력
 - 진위여부 확인을 모니터링 주소(본사 또는 실제 근무지) 입력
- 12 실적자료 제출



PART

2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사고사망만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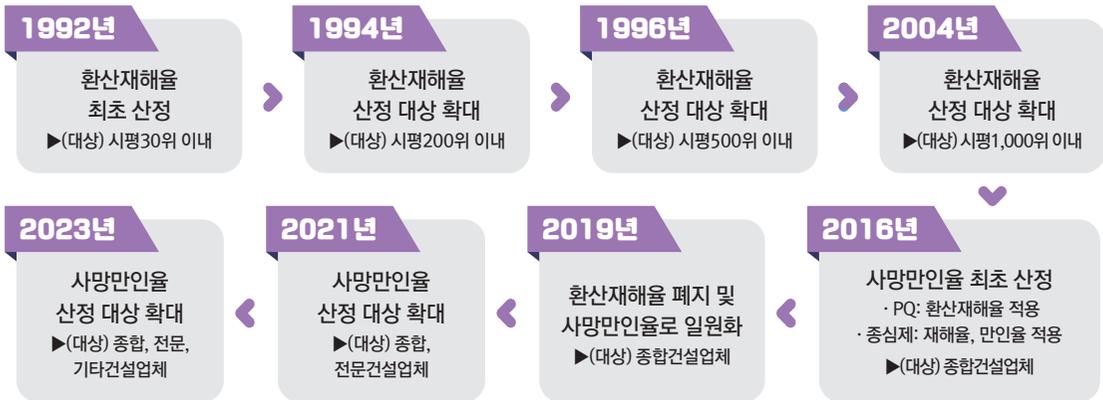


2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사고사망만인율)



01 연혁

- 건설업 산업재해발생률은 1992년 재해자중 사망재해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환산재해자에 기초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로 시작함
- 최초 3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1991년도에 발생한 재해를 산정하여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대상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도에 1,000대 확정 이후 2018년까지 14년간 지속 산정함
- 제도운영 과정에서 산재은폐, 입·낙찰 시 재해자 가중치 비율 축소, 수주경쟁이 가열되고 산정 기준 개선 및 제도폐지에 대한 지속적 요구를 감안하여 2019년도 환산재해율을 전면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 사망만인율로 일원화하였고 2021년도에 전문건설업체를, 2023년도는 기타 건설업체까지 확대하여 시범 산정함



- ('92) 환산재해율 최초 산정 (30위 업체)
- ('94~04) 환산재해율 대상 확대 (⁹⁴200 → ⁹⁶500 → ⁰⁴1,000위)
- ('16)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및 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종합건설업체)
※ PQ는 환산재해율, 종합심사낙찰제는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적용
- ('19) 환산재해율 폐지 및 사망만인율로 일원화
- ('21) 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확대 산정 (종합 → 종합 + 전문건설업체)
- ('23) 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확대 산정 (종합, 전문 → 종합, 전문 + 기타건설업체)

02 산정근거 및 대상

1. 산정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라 공공 발주공사 입·낙찰자 선정 심사* 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가·감점 부여
- * (입찰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낙찰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적격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

2. 산정대상

- 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된 5개 업종 종합건설업체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에 등록된 14개 업종 전문건설업체
 -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4개 협회에 등록된 기타건설업체
- ※ 종합면허가 있는 경우 전문(전문건설, 기계설비), 기타(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면허가 있더라도 종합건설업체로만 산정하며, 전문면허가 있는 경우 기타면허가 있더라도 전문건설업체로만 산정
→ 종합 ▶ 전문 ▶ 기타 면허 순으로 등록·산정하며 면허별 중복 등록·산정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종합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구분 | 관련협회 |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
| 종합 | 대한건설협회 |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5개 업종 |
| 전문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 철근콘크리트,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14개 업종 |

【개별 법령에 따라 기타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구분 | 관련협회 | 업종 |
|----|--|---|
| 기타 |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국가유산수리협회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전문, 일반),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 전문국가유산수리업(조경, 보존과학 등 9개 업종) |

03 산정기준 및 절차

1. 산정기준

-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은 건설업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사망자(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8 제2호 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 포함)비율로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 산정

$$\text{사고사망만인율(‰)} = \frac{\text{사고사망자 수}}{\text{상시근로자 수}} \times 10,000$$

- (사고사망자수) 산정 대상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 건설현장 포함)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

참고사항

산업재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사망자로 집계

- 재해 발생시기와 사망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발생 차기연도 3월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대상연도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
- 사고사망자 중 ①아래*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②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

* ①과 ②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

사고사망자수 산정제외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

- ◆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 ◆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
- ◆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 ◆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
- ◆ 그 밖의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참고사항

위의 각호에 따른 산정제외 규정은 일반적인 사고·사건을 의미하며 해당 공사와 관계되어 발생한 산업재해는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 (상시근로자수) ① 실적액, ② 노무비율, ③ 건설업 월평균임금 적용하여 산출

$$\text{상시근로자 수} = \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

- 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국가유산수리협회 확정신고된 실적액
- ②·③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 및 임금

- (종합)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실적액 취합·반영
- (전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실적액 취합·반영
- (기타) 각 협회에 등록된 실적액만 반영

2. 산정절차



- (만인율 산정) 건설업체 등록현황, 재해통계, 산업재해, 공사실적액 등 유관기관 기초자료 파악 후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최초산정
 - 종합, 전문 및 기타건설업체 등록현황 요청 (대한건설협회 등 7개 협회)
 - 연도별 승인일 기준 사망자 (공단 디지털전략실)
 - 하수급자 승인 재해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조사표 및 산업재해 미보고 현황 (고용노동부)
 - 전년도 공사실적액 파악 (대한건설협회 등 7개 협회)
- (이의신청) 3차에 걸쳐 이의신청 접수, 검토 후 결과 반영
 - ※ 만인율 산정 일정에 따라 이의신청 횟수 조정 가능

- (심사단회의) 이의신청 중 불인정항목 등 판단이 곤란한 경우 심사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사단* 구성 및 회의를 통해 인정 여부 결정

심사위원 자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

-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 ◆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등 건설안전분야 학식·경험이 있는 자

- (최종통보) 건설업체 및 고용노동부 산정 결과 통보
- (공표) 사망만인율 공표 및 결과 활용
 - (고용부) 만인율 불량업체 감독·점검대상 및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선정
 - (조달청, 행안부) 공사 입·낙찰제도 가·감점 부여
 -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상호협력평가에 반영

04 이의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요청)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발생률 결과를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결과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건설안전지표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참고1. 이의제기 방법】
 ※ 사고사망만인율 확정(매년 7월초) 이후 이의신청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불가능하므로 지정된 기간 안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제27조(의견제출)

-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다.

1. 건설공사 실적액 정정 [관련협회 문의]

- 건설공사 실적액은 대한건설협회 등 7개 협회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로, 공단에서 통보한 실적액과 건설업체의 실제 실적액이 상이할 경우, 건설업체는 관련협회*에 문의하여 실적액 반영 여부 확인 필요

*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국가유산수리협회

※ 산정결과 최종확정 전에 협회에 실적액 재요청하여 반영하고 있음

2. 종합건설업체(A)가 발주자 승인 후 종합건설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

| 연번 | 이의내용 | 제출 서류 |
|----|---------------------------------------|---|
| 1 | ■ 종합건설업체(A-B) 재해자 반분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 승낙서 ■ 발주자 승인요청서 ■ 도급계획서 ■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 재해자 소속확인 서류(근로계약서) ■ 하수급 업체 건설업등록증 |
| 2 | ■ 법원 판결에 따라 책임이 있는 종합건설업체의 재해자수 산정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 승낙서 ■ 발주자 승인요청서 ■ 도급계획서 ■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 재해자 소속확인 서류(근로계약서) ■ 하수급 업체 건설업등록증 법원 판결문 |

3. 공동도급에 따른 사고사망자 수 정정

| 연번 | 이의내용 | 제출 서류 | 참고사항 |
|----|-----------------------------|-----------------------------|---|
| 1 | 공동이행방식 (출자비율대로 배분) | ■ 지분분배 내용이 포함된 공사계약서, 협약서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이행 건설업체 담당자 연락처 기입 ■ 사고사망자수 비율분배에 따른 업체 간 사전협의 |
| 2 | 분담이행방식 (책임업체 재해자수 산정) | ■ 분담이행 계약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협약에 따라 분할하여 시공한 경우는 불인정 |

4. 사고사망자 수 산정 제외 요청

| 연번 | 이의사유 | 제출 서류 |
|----|---|--|
| 1 | ■ 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소방서 등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장소가 명확히 기재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 |
| 3 | ■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 과실에 의한 재해 ※ 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 과실은 제외 |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해 |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액 미반영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 ex) 전문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하도급 공사 중 발생한 재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계약서 사본 ■ 하도급계약서 사본 ■ 하수급 업체 면허등록증 사본 ■ 재해자 소속확인 서류 ■ 해당공사 실적액 확인서류 |

05 산정결과 적용

- (가·감점) ^공건설공사 입·낙찰제도 심사기준에 따른 가·감점 반영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 (조달청)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가·감점 최대 ±1.0점 반영
- (행안부) 공사이행능력심사 중 신인도 가·감점 최대 ±2.0점 반영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조달청 지침, 24.10.2. 시행] | 지자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4.7.1. 시행] |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가점 | 공사이행능력심사 중 신인도 가점 |
|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1.0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2.0 |
|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0.6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1.6 |
|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3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1.2 |
|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0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8 |
|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0.5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4 |
|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1.0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0.4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0.8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2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6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2.0 |

- 종합심사낙찰제

- (조달청) 사회적 책임분야(건설안전) 가·감점 최대 ±0.8점 반영
- (행안부) 사회적 신인도(사고사망만인율) 가·감점 최대 ±1.0점 반영

| 종합심사낙찰제 [조달청 지침, 24.10.2. 시행] | 지자체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행정안전부 예규, 24.7.1. 시행] |
|---|--|
| <p>공사수행능력 중 사회적 책임분야(건설안전) 심사점수 가점</p> $0.8-0.8 \times \frac{\text{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text{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p>(단,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8점)</p> | <p>기술이행능력 중 사회적 신인도(사고사망만인율) 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1.0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0.8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6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4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2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1.2배 이하 -0.2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0.4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0.6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0.8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1.0 |

* (최근년도 사망만인율*0.5)+(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0.3)+(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0.2)

- 시설공사 적격심사

- (조달청)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신인도 가감점 최대 ±1.0점 반영
- (행안부) 추정가격 300억 미만 공사 신인도 평가 중 가감점 최대 ±2.0점 반영

| 시설공사 적격심사 [조달청 지침, 24.10.2. 시행] |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행정안전부 예규, 24.7.1. 시행] |
|---|---|
| <p>수행능력 평가 중 신인도 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1.0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0.6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3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0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0.5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1.0 | <p>공사이행능력심사 중 신인도 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2.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1.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1.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2.0 |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 고용노동부에서 최근연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업체에 한하여 대한 건설협회에 통보하고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공사실적액 감액요청 및 상호협력평가* 지표에 반영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정도를 종합건설업체 대상으로 평가하는 제도

06

관련 질의 응답

1. 협력업체 재해 발생시 도급인 산정 여부

-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사고 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2. 공동도급에 따른 재해자 분배

- A 공동도급에 따른 계약의 경우 도급 계약서상 지분율에 따라 재해자를 분배하나, E.P.C 프로젝트의 경우 공동 이행방식 또는 분담 이행방식이 모호하므로 발주자 및 참여사 전체가 분할(분담) 시공에 동의하는 계약서, 승인서류 제출 시 인정(감리원 확인서류 불인정)할 수 있음.

3.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해

- A 휴게소 휴식 중 사망, 작업 종료 후 퇴근 중 사망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과실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법원 판결, 내사종결, 출장복명 등)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음.

4. 해당 공사용 장비 외 교통사고

- A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고 장소가 명확히 기재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과실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법원 판결, 내사종결, 출장복명 등)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음.

5.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

- A** 해당 건설공사(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와 관련없이 제3자의 과실로 판단될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법원 판결, 내사종결, 출장복명 등)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음 (단, 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 과실은 해당되지 않음)

* 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란 원도급사, 하도급사,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장비 임대, 물품 납품 등에 관련된 작업자 등을 포함한 해당 목적물 완성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말하며, 제3자는 해당 목적물의 공사와 일체 관련이 없는 일반시민, 행인, 차량 등을 의미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여부

- A** 건설공사 도급인과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경우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지입차주)인 경우에는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정에서 제외

참고 1 사고사망만인율 이의제기 방법

1. 홈페이지(<https://const.kosha.or.kr>)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종합심사낙찰제 이의신청 클릭



3. 각 사망자에 대한 이의신청 실시



3-1. 공동도급에 의한 지분율에 의한 재해자 분배 이의신청

공통도급업체 등록 프로그램입니다.
(지분율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하며 공동도급사가 없을시 임의성명료의(999)를 선택하시게 바랍니다.)

| No | 업체명 | 지분율 | 재해지분 | 사업자번호 | 법인번호 |
|----|-----|-------|------|-------|------|
| 1 | | 100 % | 1 | | |
| 2 | | % | | | |

계 100% 1 사망자명 : 송시준

이의신청 사유

필수 작성사항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
 -지분 분배시-
 손해배를 된 업체 담당자 연락처 필수 작성

공동도급 계약서 [첨가]

계약서 첨부파일은 EXCEL, HWP, PDF, ZIP의 단일파일 첨부만 가능합니다.
(다른 파일 첨부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목록]

프로그램 설명 [확대보기]

① **도급업체 추가**
공동도급업체 등록 시 사업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동도급사 추가

② **도급업체 검색**
검색을 클릭하면 공동도급업체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뜨며 업체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③ **공동도급계약 조회**
공동도급계약 조회

④ **도급업체 선택**
업체가 조회되면 지분율을 입력 하고 저장합니다.

⑤ **공동도급 계약서 업로드**
공동도급 계약서는 지정형 파일을 선택하여 합니다.
공동도급 계약서 [첨가]

③ 담당자명: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 순으로 입력

만약 지분분배 이의신청 시 지분이 분배되는 상대 회사 및 연락처 필수 기입

→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담당자명,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 지분분배 업체 담당자 정보 필히 입력

3-2. 기타 이의신청

사고사망자

기타 이의신청

기타 이의신청 사유

① 담당자명: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 순으로 입력

② 기타 이의신청 사유

③ 담당자명: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 순으로 입력

④ 공동도급 계약서 [첨가]

⑤ [이의신청] [목록]

→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담당자명,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 필히 입력

2.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4. 공동도급사 이의신청 관련 확인

- 공동도급사 이의제기 관련하여 이의신청여부 확인 후 실제와 부합하면 승인, 미부합하면 반려

공동도급사 확인

①

②

| No | 년도 | 사업자번호 | 업종명 | 계약구분 | 계약발생일 | 계약사명 | 구간번호 | 계약구분 |
|----|------|-------|-----|------|-------|------|------|------|
| 1 | 2019 | | | 사할자 | | | | 0.0 |

③ 승인/반려 클릭

If 미처리 시 공단에서 일괄 처리 예정

→ 만약 각 차수 이의제기 기간 동안 승인/반려 미처리 시 공단에서 일괄 처리 예정



붙임자료

1. 건설업체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세부 평가기준
2.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재발생 보고의무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3. 공사계약 낙찰방식
4.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심사항목 세부지표



01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기준 (고용부 고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정 2014. 04. 25. 고시 2014-20호
개정 2017. 10. 12. 고시 2017-49호
개정 2020. 01. 07. 고시 2020-4호
개정 2023. 08. 31. 고시 2023-4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이하 “평가년도”라 한다)의 전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만 전담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선임보고된 자를 말한다.
2.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말한다.
3.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란 건설업체 본사에서 안전·보건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4. “본사 안전 · 보건 전담 조직”이란 건설업체 본사에 2명 이상의 안전 · 보건 전담자로 구성되어 안전 · 보건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법, 영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4조(평가기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평가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평가기간”라 한다) 동안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제2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업체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년도 2월 말까지 공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항목) ①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별표1의 배점기준에 따라 공통 항목과 가점 항목의 합계로 평가하며 총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통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1. 사업주 안전 · 보건활동
2. 전담 안전 ·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3. 본사 안전 · 보건 전담자

③ 가점 항목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여부를 평가하여 부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건설업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제2항제2호를 평가하지 않는다.

제7조(사업주 안전 · 보건활동) 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 안전 · 보건활동은 사업주 안전 · 보건교육 과정 이수 여부와 사업주 현장 안전 · 보건활동 참여 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사업주 안전 · 보건교육 과정 이수(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공단이 실시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교육 과정을 평가기간 내 이수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 사업주 현장 안전 · 보건활동 참여 실적은 평가기간 내 사업주가 소속 건설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안전 · 보건 간담회 참여, 안전 · 보건활동 이행 확인, 위험요인 점검 실적을 평가한다.

④ 사업주 안전 · 보건활동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른다.

제8조(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전담 안전관리자와 전담 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각각 평가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전담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만 평가한다.

②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평가기간 중 선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령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선임 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이 아닌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ext{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 \frac{\text{정규직 전담 안전관리자 수}}{\text{선임 의무 전담 안전관리자 수}} \times 100$$

$$\text{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 \frac{\text{정규직 전담 보건관리자 수}}{\text{선임 의무 전담 보건관리자 수}} \times 100$$

④ 둘 이상의 업체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사업주 소속으로 한다.

⑤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다.

제9조(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는 건설업체 본사에 소속되어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하는 자의 수와 본사 안전·보건 조직 구성여부를 평가한다.

②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는 평가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다목에 따른다.

제10조(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①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신청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 제2호가목의 배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 삭제

2. 삭제

- ② 가점부여에 대한 판단은 평가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진위여부를 본사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의 5급 이상 공무원

2.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3.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에 대한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한 후 건설업체에서 제출 서류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연도의 평가점수를 발표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영점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4-20호, 2014. 4. 25.>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4년도 평가는 2014. 7. 1부터 12.31까지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1년간의 실적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부 칙<제2017-49호, 2017. 10.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4호, 2020. 1. 7.>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3-45호, 2023. 8.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4년 2월말 까지 제출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건설업체 산업
재해예방활동 실적은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배점기준

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범위 | 비 고 |
|-----------------|-------------------------|-------|---------------------|
| 공통 항목 (100점) | 가.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 40 | 안전·보건경영 촉진 |
| | 나.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 40 | 안정적인 현장 안전·보건활동 지원 |
| | 다.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 20 | 전사적인 안전·보건활동 촉진 |
| 가점 항목 (5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 5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촉진 |
| 계 | | 105 | 100점 초과 시 100점 |

2.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미보유 건설업체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범위 | 비 고 |
|-----------------|-------------------------|-------|---------------------|
| 공통 항목 (100점) | 가.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 50 | 안전·보건경영 촉진 |
| | 나.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 50 | 전사적인 안전·보건활동 촉진 |
| 가점 항목 (5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 5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촉진 |
| 계 | | 105 | 100점 초과 시 100점 |

별표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1. 공통항목

가.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 배점(40) | 확인서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과정 이수 * 평가기간 내 1회 이수 시 만점 | 10 | 제출서류 없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간담회 참여 -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 위험요인 점검 * 평가기간 내 10회 이상 참여 시 만점 (회당 3점, 월 최대 1회 인정) | 30 | 별지 제1호서식 |

(2)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미보유 건설업체

|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 배점(50) | 확인서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과정 이수 * 평가기간 내 1회 이수 시 만점 | 15 | 제출서류 없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간담회 참여 -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 위험요인 점검 * 평가기간 내 10회 이상 참여 시 만점 (회당 3.5점, 월 최대 1회 인정) | 35 | 별지 제1호서식 |

* 참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교육' 과정 개설·운영

나.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 배점(40) | 확인서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임 신고된 전담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25점 -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20점 - 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5점 -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10점 - 정규직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5점 | 25 | 별지 제2호서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임 신고된 전담 보건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15점 -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12.5점 - 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0점 -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7.5점 - 정규직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5점 | 15 | 별지 제3호서식 |

- 단,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미보유 건설업체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 배점(40) | 확인서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임 신고된 전담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40점 -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32.5점 - 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25점 -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17.5점 - 정규직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10점 | 40 | 별지 제2호서식 |

(2)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미보유 건설업체

- 이 항목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다.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과 배점 | | | 확인서류 |
|--------------------------------|--|--------|-----------|
| 구분 |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 배점(20) | 별지 제4호 서식 |
| 1위~20위 업체 | 1. 본사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 수 - 본사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 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x)를 소수점에서 반올림한 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15점 계산식: $x = (21 - \text{해당업체 시공능력순위}) \times 0.75 + 4$ - 본사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 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x)를 소수점에서 반올림한 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10점 계산식: $x = (21 - \text{해당업체 시공능력순위}) \times 0.5 + 3$ | 15 | |
| | 2.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 및 전담 인원 - 전담 조직과 전담 인원이 있으면 5점 - 전담 조직이나 전담 인원이 없으면 0점 | 5 | |
| 21위 ~200위 업체 | 1.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2명을 포함하여 -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4명 이상이면 15점 -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3명이면 10점 | 15 | |
| | 2.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있으면 5점 | 5 | |
| 201위 ~500위 업체 | -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3명 이상이면 20점 - 본사에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2명이면 10점 | 20 | |
| 501위 ~1,000위 업체 | -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2명 이상이면 20점 - 본사에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1명이면 10점 | 20 | |
| 상위 1,000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있으면 20점 - 본사에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있으면 10점 | 20 | |

* 참고사항: 구분 항목의 순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토목건축공사업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순위에 따름

(2)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미보유 건설업체

|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 배점(50) | 확인서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있는 경우 50점 | 50 | 별지 제4호 서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에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있는 경우 20점 | | |

2. 가점항목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여부

|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 배점(5) | 확인서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을 받아 인증 유지 중인 경우 5점 | 5 | 제출서류 없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공단에 인증 신청을 하여, 인증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점 | | |

* 인증유지·신청 등은 평가기간 마지막 날(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별지 제1호서식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현황

(제1쪽)

I. 건설업체 개요

| | | | | |
|----|-------|--|-----------------------|--|
| 본사 | ①사업장명 | | ②법인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 | ④사업장관리번호 | |
| | 소재지 | | 시공능력평가순위 | |

II.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현황

| 연번 | 현장명 | ④사업개시번호 | 현장 방문일 | 주요 내용(요약)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합계 | | | | 총 () 회 |

작성자 소속 및 성명 :

작성자 전화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공단의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작성방법

- ① 사업장명: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결과보고서

(제2쪽)

I. 건설현장 개요

| | | | |
|-------|--|----------------------|--|
| ①연 번 | | 현장명 | |
| 방문 일시 | | ②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 소재지 | | 공사금액 (VAT 포함) | |

II. 사업주 안전·보건 간담회

| | | | | |
|-------------|----|------|--------|------|
| 참 석 자 | 본사 | (소속) | (직급) | (성명) |
| | | (소속) | (직급) | (성명) |
| | 현장 | (소속) | (직급) | (성명) |
| | | (소속) | (직급) | (성명) |
| ③주요 내용 | | | 간담회 사진 | |
| | | | | |

III. 현장 안전·보건활동

| | | | |
|----------------|--|-------------------|--|
| 작업 전 안전회의(TBM) |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
| 아차사고 신고제도 |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 비상조치계획 수립 |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
| ④참고자료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전담 안전관리자 현황 목록

I. 건설업체 개요

| | | | | |
|----|-------|--|-----------------------|--|
| 본사 | ①사업장명 | | ②법인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 | ④사업장관리번호 | |
| | 주소 | | 시공능력평가순위 | |

II. 전담 안전관리자 현황

| 연번 | 현장명 | ④사업개시번호 | 공사금액 (VAT 포함) | 성명 | 성별 | ⑤선임기간 (평가기간 내 근무일수) | 정규직 (O,X)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합계 | ⑥선임 의무 전담 안전관리자 수 | ()명 | | ⑦정규직 전담 안전관리자 수 | ()명 | | |

작성자 소속 및 성명 :

작성자 전화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전담 안전관리자의 선임보고서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1부.

공지사항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공단의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작성방법

- ① 사업장명: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⑤ 선임기간: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된 날 ~ 종료일(예시 19.11.20.~20.10.5. 또는 19.11.20.~)
- ⑥ 선임 의무 전담 안전관리자 수: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평가기간 중 6개월 초과 근무한 전담 안전관리자 합산 수
- ⑦ 정규직 전담 안전관리자 수: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평가기간 중 6개월 초과 근무한 정규직 전담 안전관리자 합산 수

별지 제3호서식

전담 보건관리자 현황 목록

I. 건설업체 개요

| | | | | |
|----|-------|--|-----------------------|--|
| 본사 | ①사업장명 | | ⑧법인등록번호 (⑨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 | ④사업장관리번호 | |
| | 주소 | | 시공능력평가순위 | |

II. 전담 보건관리자 현황

| 연번 | 현장명 | ④사업개시번호 | 공사금액 (VAT포함) | 성명 | 성별 | ⑥선임기간 (평가기간 내 근무일수) | 정규직 (O,X)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합계 | ⑥선임 의무 전담 보건관리자 수 | ()명 | | ⑦정규직 전담 보건관리자 수 | | ()명 | |

작성자 소속 및 성명 :

작성자 전화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1부.

공지사항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공단의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작성방법

- ① 사업장명: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⑤ 선임기간: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된 날 ~ 종료일(예시 19.11.20.~20.10.5. 또는 19.11.20. ~)
- ⑥ 선임 의무 전담 보건관리자 수: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평가기간 중 6개월 초과 근무한 전담 보건관리자 합산 수
- ⑦ 정규직 전담 보건관리자 수: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평가기간 중 6개월 초과 근무한 정규직 전담 보건관리자 합산 수

별지 제4호서식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현황

I. 사업장 개요

| | | | | |
|----|-------------------|---|-----------------------|--|
| 본사 | ①사업장명 | | ②법인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 | ④사업장관리번호 | |
| | 주소 | | 시공능력평가순위 | |
| | 안전·보건 조직 구성 여부 |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안전·보건 조직 (팀·부서) 명 | |

II. ⑥본사 안전보건 전담 임·직원 현황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직급(직위) | 현 부서 발령일 (평가기간 내 근무일수) | ⑥안전·보건 관련 자격 | ⑦임원 (O/X)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합계 | 본사 안전·보건 전담 임·직원 수 | ()명 | 안전·보건관리자 자격보유자 | ()명 | | |

작성자 소속 및 성명 :

작성자 전화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본사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1부.
2. 안전·보건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자격증의 사본 1부.
3.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공지사항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공단의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작성방법

- ① 사업장명: 도급인 본사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⑤ 본사 안전·보건 전담 임·직원 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평가기간 중 6개월 초과 근무한 정규직 안전·보건 전담자의 성명 및 자격현황
- ⑥ 안전·보건 관련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제8호는 제외)와 별표6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의 종류
- ⑦ 임원: 본사에 안전·보건 조직이 있고, 그 조직 구성원이 상법상 임원인 경우

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24. 9. 26.>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1.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로 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한다)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ext{사고사망만인율}(\text{‰}) = \frac{\text{사고사망자 수}}{\text{상시근로자 수}} \times 10,000$$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사고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사고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고사망자 수를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합산한다.

3)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연도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마.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한다.

4. 제2호의 계산식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text{상시근로자 수} = \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

가.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3. 불임자료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호라목에 따른 사고사망자 수 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을 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라. 둘 이상의 건설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03 공사계약 낙찰방식

01 종합심사 낙찰제

✓(개념)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

일반

✓(대상) 입찰공고금액 300억원 이상 공사

✓(평가기준)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책임(가점) 합산하여 최고점자가 낙찰

- 공사수행능력 : 시공실적, 매출액비중, 배치기술자, 시공역량 등

- 입찰금액 : 균형가격(입찰금액 상·하위 20% 제외 평균가격)에 근접한 순으로 점수를 산정, 공종별 가격 적정성도 심사(감점)

- 사회적책임 :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등 최대 2점 가점

간이

✓(대상) 입찰공고금액 100억~300억원 공사

✓(평가기준) 일반종합심사제 기준 대비 중소규모 공사 특성을 반영하여 공사수행 능력은 완화하고, 가격평가 기준 강화

- 공사수행능력 : 일반종합심사제 대비 시공평가결과, 매출액 비중은 제외하고, 시공실적, 배치기술자 평가는 완화

0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

✓(개념) 입찰 전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 및 입찰참가자격 부여

- 프로세스 : ① 입찰공고 → ② P.Q → ③ 입찰 → ④ 적격심사 → ⑤ 낙찰자결정

✓(대상) 입찰공고금액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

✓(평가기준) 1차심사[경영상태] 기준등급 대비 적격여부 판단, 2차심사[공사이행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 지역/중소기업 참여도, 신인도 등을 평가, 종합평점 90점 이상 적격

|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 배점 | 평가 내용 |
|-------------|----------|----------------------|
| 시공경험 | 40~45점 | 동일종류 공사실적, 업종실적 등 |
| 기술능력평가 | 41~45점 | 기술자보유현황, 신기술개발 등 |
| 시공평가결과 | 6~10점 | 시공평가결과 점수 |
| 지역/중소기업 참여도 | 5점, 4점 | 지역업체/중소업체 참여비율 |
| 신인도 | +5점~-10점 | 시공성실성, 하도급, 건설제재처분 등 |

03 적격심사

✓(대상) 입찰공고금액 100억원 미만 공사

✓(평가기준) 최저가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일정점수(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 계약이행능력은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

| 공사규모 | 점수비중 | | 통과점수 | 낙찰하한율 |
|----------|------|----|------|--------|
| | 이행능력 | 가격 | | |
| 100억~50억 | 50 | 50 | 95 | 85.50% |
| 50억~10억 | 30 | 70 | 95 | 86.75% |
| 10억~3억 | 20 | 80 | 95 | 87.75% |
| 3억 미만 | 10 | 90 | 95 | 87.75% |

*낙찰하한율 : 계약이행능력 만점을 가정 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의 최소 비율

04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심사항목 세부지표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지침 제8757호, 시행 2024. 10. 2.)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 10)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 -1~+1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1.0 +0.6 +0.3 0.0 -0.5 -1.0 |
| | 11)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1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1.0 +0.8 +0.6 +0.4 +0.2 0.0 |

※ 주)

1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12-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 (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 7. 1.)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 라. 신인도 평가 | (라)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 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 2.0 ~ -2.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2.0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1.6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1.2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0.8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 0.4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0.4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 -0.8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 -1.2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 -1.6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2.0 |
| (바)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0 ~ 1.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2.0 | |
| |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1.5 | |
| |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1.0 | |

※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자) “(바)”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 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2. 종합심사낙찰제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4656호, 시행 2024. 10. 2.) 〉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요소 | 등급 | 점수 |
|------|-------------------|----------------------------|---|--|
| 건설안전 | -0.8 ~ +0.8 | 사고사망만인율 | 평점 = 0.8(배점) - 0.8 ×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 0.8점) | |
| |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 A. 1건 B. 2건 C. 3건 D. 4건 E. 5건 | -0.16 -0.32 -0.48 -0.64 -0.80 |
| |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 +0.80 +0.72 +0.64 +0.56 +0.48 +0.40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2 -0.4 |
| |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2 -0.4 |

※ 주)

- 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 2-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 4)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4-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6)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은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F 등급을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 7. 1.)〉

| 구분 | 심사항목 | 평가방법 | 배점한도 | 비고 |
|-----------------|---|--|-------------------|--|
| 마. 신인도 평가 | 사고사망만인율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1.0 | 업체 가중평균사고 사망만인율 ----- 건설업 가중평균사고 사망만인율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0.8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0.6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0.4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0.2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0.2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 -0.4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 -0.6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 -0.8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1.0 | |
|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사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평점 90점 이상인 자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1.0 0.8 0.6 | |

※ 사회적 신인도 평가

1)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 0.5점까지 부여한다.

가) 사고사망만인율은 3개년 가중평균*으로 산출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7)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 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3. 시설공사 적격심사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8735호, 시행 2024. 10. 2.) 〉

| 심사항목 | 세부심사 항목 | 적용 금액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
| 종합공사 신인도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 사전심사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다만,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사. 기타' 25)는 평가하지 않음) | |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 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 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다만, 10) 평가 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
| | |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 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 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에 따름 |
| 전문공사 신인도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 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 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 |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 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 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다만, 다. 10) 평가 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 7. 1.)〉

| 심사항목 | 적용 금액 | 세부심사 항목 | 평가방법 | 점수 |
|-----------|--------------------------------|--|------------------------|------|
| 신인도 평가 |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 |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적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x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 | | |
| |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 | 3. 최근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 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2.0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1.6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1.2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0.8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 +0.4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0.4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 -0.8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 -1.2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 -1.6 | |
|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2.0 | |
| | |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 +2.0 |
| | | |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1.5 |
| | | |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1.0 |
| | | |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 0.0 |

본 도서의 내용은 건설안전지표 관련 업무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 작성 되었으며, 업무상 이의 제기 등 소명자료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 건설안전지표 안내가이드에 관하여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52-703-0699

건설안전지표 안내가이드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및 사고사망만인율

2024-건설안전실-714

발행일 | 2024년 11월

발행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 종 주

발행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TEL : 052)703-063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